

힘이되는 평생친구, 보건복지가족부



## 보건복지가족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(경유)

제목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
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-2408호('09.4.9)

2. 2009년4월9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“석면 불검출 기준” 시행('09.4.3.)이전에 제조한 품목들(붙임1)에 대하여 판매·유통 금지 및 회수를 명령하되, 붙임2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2009년4월9일자 이후로 30일간 판매·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.

3. 이에 따라 우리부는 붙임1의 품목들 중 “석면 불검출 기준” 시행('09.4.3.)이전에 제조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·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(2009년4월9일자)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중지하며, 붙임2의 품목들 중 “석면 불검출 기준” 시행('09.4.3.)이전에 제조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2009년5월9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하오니 귀 원은 관련 단체에 동 사실 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: 2009년4월9일자 보험급여 중지대상 1부

붙임2 : 2009년5월9일자 보험급여 중지대상 1부

붙임3 :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문. 끝.

보건복지가족부



약무주사 김선영

행정사무관 하태길

보험약제과장 전결 04/09  
이태근

협조자

시행 보험약제과-1602 ( 2009.04.09. ) 접수 ( 2009.04.10. )  
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/ <http://www.mw.go.kr>  
전화 02-2023-7427 전송 02-2023-7450 / [hestia08@mw.go.kr](mailto:hestia08@mw.go.kr) / 공개